

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3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외9인(김화덕,배용식,안대국,윤권근,이신자,박종길,이성순,김인호,홍복조)
- 발의일자: 2021. 2. 22.
- 회부일자: 2021. 2. 25.
- 상정 및 의결: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3. 9.)

2. 제정이유

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사업(안 제4조)
- 라. 운영위원회의 설치, 구성, 기능, 운영(안 제5조~안 제8조)
- 마. 위원회의 회의, 간사, 위원의 해촉(안 제9조~안 제11조)
- 바. 수당 등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2. 22. ~ 2021. 3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조례안은 현행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현재 집행부가 이미 제공 중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‘드림스타트’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안에 규정된 개별 조문 역시 집행부와 (기 시행 중인 행정사항 등에 대해)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점에 볼 때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